국무회의 보고자료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05. 11. 15

국 무 조 정 실

□ 지난 4.30 재원배분 국무위원 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ODA) 체계의 효율화를 전제로, 2009년까지 원조 규모를 GNI 대비 0.1%로 확대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국가전략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 참여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고자 함

목 차

Ⅰ.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요약)

1. 배경 및 추진경과 ····· 1
2.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 1
3. 향후 추진계획 ····· 7

Ⅱ.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상세)

1. 정책 환경 ····· 9
2. 국제개발협력 현황 ····· 10
3.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 ····· 11
4.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 16
   4.1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모델 정립 ····· 17
   4.2 추진시스템 개선 ····· 18
   4.3 효율성 제고 ····· 20
   4.4 인프라 구축 ····· 23
   4.5 국민참여 확대 ····· 28
5. 향후 추진계획 ····· 30

<첨부1> 부처별 행정조치사항 ····· 31
<첨부2> 국제개발협력 개선 비교표 ····· 32
<첨부3> 국제개발협력정책 체계 비교표 ····· 33
<첨부4>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실적과 현황 ····· 34
<첨부5> 주요부처·기관별 국제개발협력현황 ····· 36
<첨부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실적 및 질적 조건 비교 ····· 37
<첨부7>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DAC) 관리체계 ····· 39
<첨부8> 국제개발협력의 국제동향과 주요과제 ····· 41

Ⅰ.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요약)

Ⅰ. 배경 및 추진경과

□ 재원배분 국무위원회의('05.4.30)시 국제개발협력 **운영체계 효율화를 전제로 원조 규모 확대 결정**

○ 2009년까지 GNI대비 0.1% 달성목표 설정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 관계부처, 기관 및 NGO등이 참여하는 'ODA개선협의회'를 운용, 의견 수렴

○ 아울러 대국민 여론 조사, 해외실태조사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실시

☞ **관계부처 차관회의(11.9) 결과를 반영,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안)' 수립**

Ⅱ.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가. 현행 국제개발협력 운영상의 문제점

□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이념, 목표, 전략 부재**

○ 기관·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한 현행 법률체제 (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로는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목표, 관리 시스템 및 조정기구 등을 규정하기 곤란

□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비해 국제개발협력 규모 미흡

○ '04년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규모는 4.2억불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6%에 불과

※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 네덜란드(0.74%) 및 1인당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63%), 그리스(0.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취약

○ 원조에 대한 조정기구 부재로 **조정 및 통합기능이 취약**

- 중장기 원조정책수립, 국별지원 계획수립 등에 대한 협의·조정 미흡

※ 현재는 중장기적 국별지원 계획없이, 일회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

○ **유·무상사업간 사전 협의 및 조율 미흡**으로 종합적인 연계효과 기대곤란

□ 성과중심적인 원조체계 미비

○ **수원국의 분야별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원조 추진전략 부재**

○ 유무상 원조의 계획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부재로 성과중심적 사업 추진 곤란

※ 개별적인 사업평가는 실시중이나,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는 없는 실정

○ 현장 우선적인 원조 수행체계 미흡

※ 선진공여국들은 수원국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지 공관의 역할 중시

□ 국민의 지지 및 참여기반 취약

○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우리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인지도가 37%에 불과 ('05.8.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 **개발NGO, 대학,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쉽 체계 구축 미흡**

나. 개선방안

유엔 천년개발목표 달성년도인 2015년을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비전 수립

- 우리의 비교우위, 개발경험 등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 전략' 추구-

①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 우리의 비교우위분야에 집중, 원조성과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전략 차원의 국제개발협력모델 개발**

□ **우리의 비교우위분야에 중점지원**

○ △경제개발경험 △빈곤퇴치(보건위생, 환경 등) △IT분야 △인적자원개발 △인프라구축 등에 주력

○ 민주주의 가치 향상, 인간안보(난민지원, 치안유지 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

○ 수원국의 수요와 우선순위도 적극 반영

□ **유·무상원조 수단을 다양하게 혼합·연계하여 활용**

② 추진시스템 개선

□ 목표, 전략, 집중지원 대상국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연도별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심의·확정

□ 유·무상 정책 및 시행부처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 정비**

○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 평가방식 도입

□ **해외 긴급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재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

사업수행 체계도

<현행>

부처별 연간계획 → 사업 발굴·선정 → 시행 → 사업별 효과 평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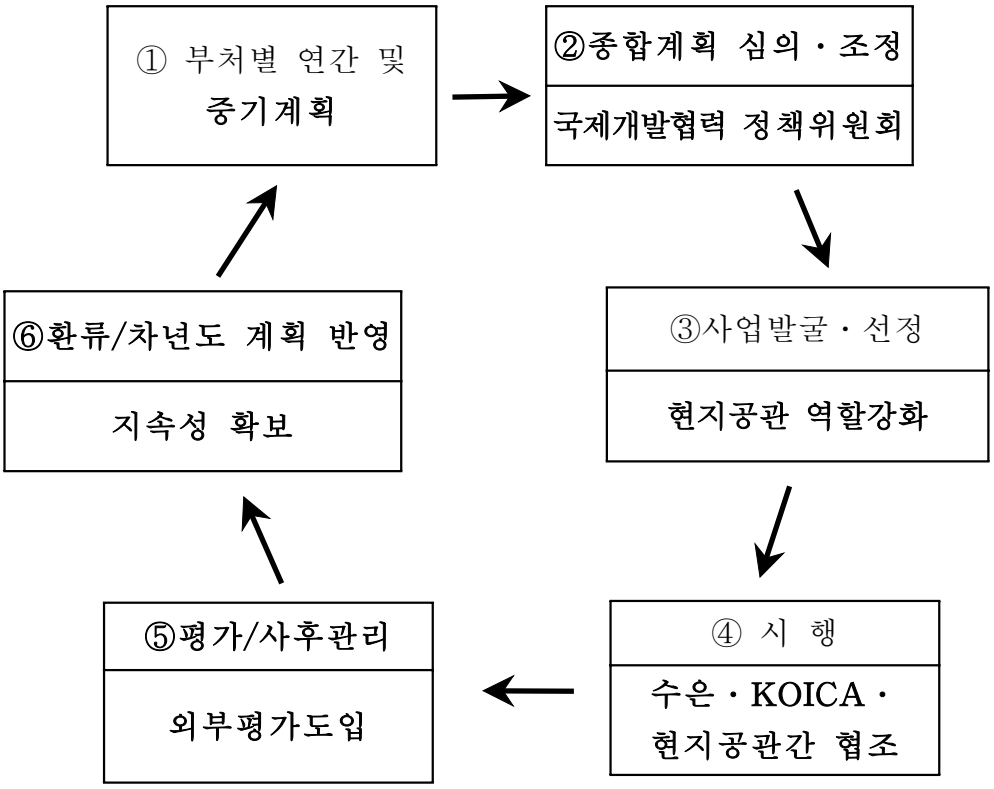

※ 정책위원회 심의부터 평가까지 민간참여

③ 효율성 제고

□ 성과 중심적 사업 실시체계 구축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3~5년 단위의 中期 국별 지원 전략을 수립**

- 아태지역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대륙별 3~5개 거점국가 포함
- 중점지원국의 경우, 2~3개 중점협력분야, 일반지원국의 경우, 1~2개 중점협력분야로 **선택과 집중**

○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유무상자금과 기술을 패키지화하고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사업을 상호 연계

□ 원조의 질적 개선

○ **OECD 기준에 부합토록 점진적·단계적 Untied화**

○ 무상원조비율을 단계적 상향 조정

○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

※ 우리의 GNI대비 최빈국 지원 비율은 0.01%로 DAC의 1/8 수준

□ 중점 지원국가에 대해 다년간 예산 지원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

□ **수출입은행(EDCF) - KOICA간 업무협조 등 연계 강화**

④ 인프라 구축

□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 신설**

○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조정 등을 위한 기구로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수출입은행장, 국제협력단,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를 설치

※ 우선 대통령령으로 동 위원회 설치 추진

ODA 정책체계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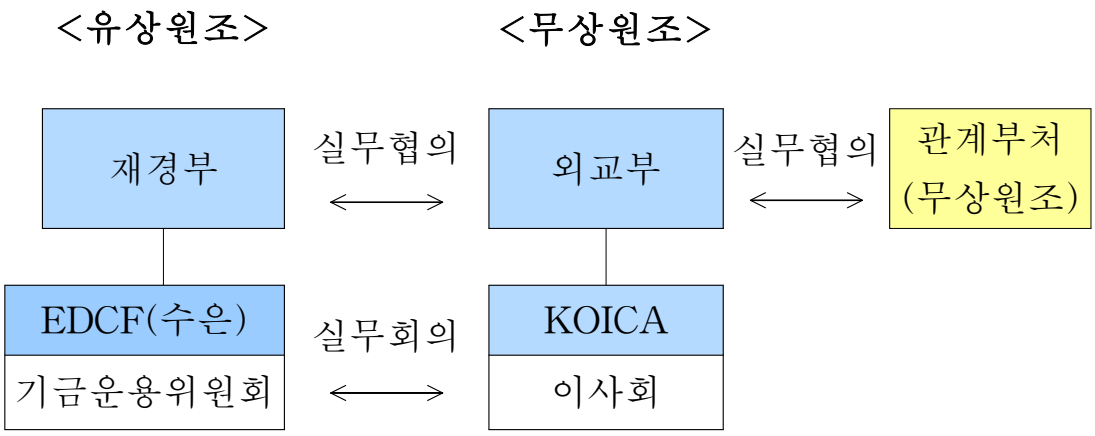

[개 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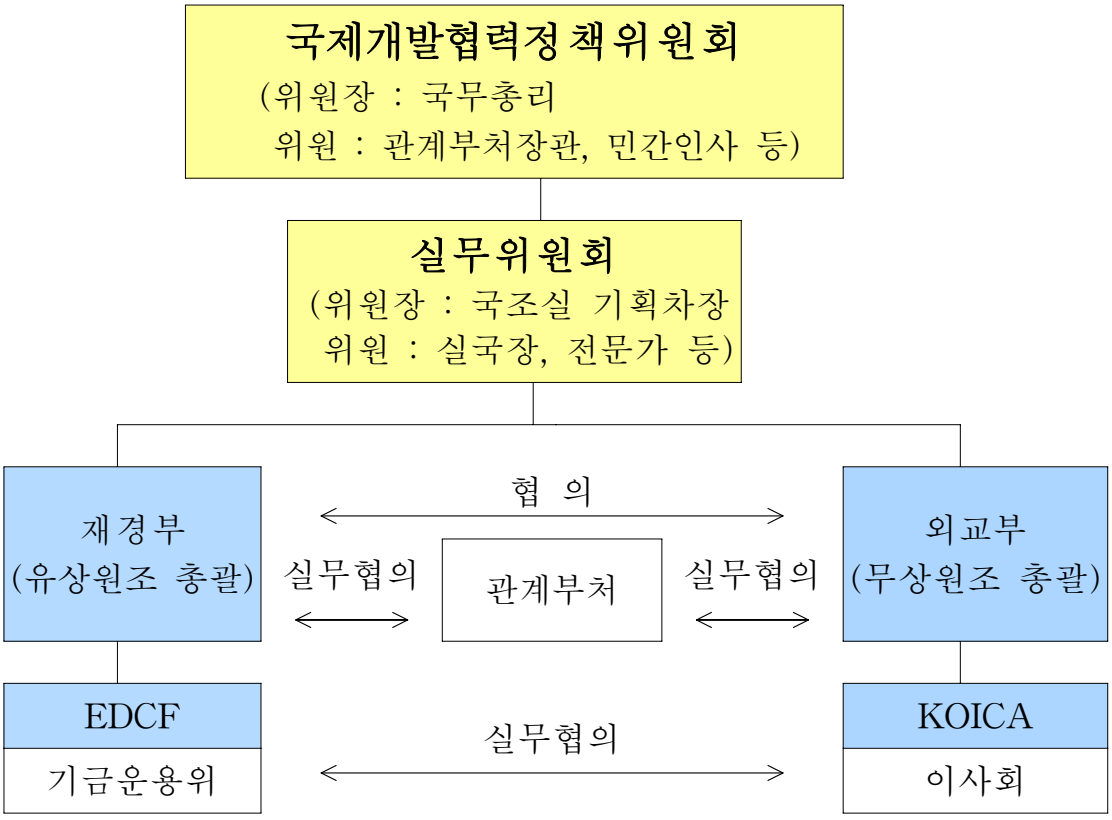

□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전략,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 정책위원회, 관련기구 설치, 해외 긴급재난 구호 등을 규정

□ 구제개발협력 규모의 확대

○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4년(OECD DAC 평균) 0.25%로 확대 검토

□ 국제개발협력 수행역량 확충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웍 구축 등

□ OECD DAC 가입 추진

○ 2010년 전후를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하되 원조목표 달성 추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한국은 OECD산하 26개 위원회중 DAC에만 유일하게 미가입

⑤ 국민참여 확대

□ 민간과의 파트너쉽 강화

□ 개발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NGO사업 지원방식 다양화 추진

□ 대국민 홍보 강화

○ 워크샵, 강연회 개최, 뉴스레터 배포 및 인터넷 홍보, 국제개발협력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국민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

Ⅲ.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마련(‘05.11～12)

■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및 출범(‘05.12～’06.1)

Ⅱ.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상세)

- 글로벌 리더국가를 향한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전략-

1. 정책 환경

□ **2000년 유엔 천년개발목표(MDGs) 채택을 전후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요구 증대**

○ **UN을 중심으로** 빈곤완화, 지구환경보전, **대개도국 원조 증대** 등 범지구적 문제의 **논의** 증대

- '05.9.「UN 특별정상회의」선언을 통해 선진국에 대해 국제개발협력(ODA)[1]를 **국민총소득의 0.7%까지 제공**토록 재확인

□ **세계 11위 경제규모와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에 상응한 원조 증대 요구**

○ **인도적 및 범지구적 문제해결 노력에 동참**요구 증대

○ 경제성장에 따라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개도국으로부터의 무역역조 시정 요구도 점증

※ 대개도국 무역흑자(억불) : 149('02)→218('03)→325('04)

□ **기업,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고조**

○ 재계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시장진출 지원강화 요구

○ 민간원조단체는 ①국제개발협력 확대, ②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③시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등을 요망

○ '04.12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복구지원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글로벌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활용 필요**

※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이미지 상승, 국가IR 등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 필요

---

1) 이하 본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제개발협력은 OECD에서 정의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동의어로 사용, ODA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와 양허성 차관(증여율 25%이상의 장기저리 차관)을 말함

2. 국제개발협력 현황

□ 국제개발협력 실적 ('04년 기준)

○ 지원금액은 '91년 **6천만불**에서 '04년 **4.2억불**로 크게 **증가**

- 국민 총소득(GNI)대비 규모는 '01년 이후 0.06%수준 지속

○ '00년이후 **양자간 원조가 60-80%**, 다자간 원조가 20-40%를 차지

- 양자간 원조중 유상비중은 '03년이후 이라크·아프간에 대한 거액 무상원조로 인해 40%대로 하락(70%→40%)

○ 지리적 분포는 **아시아 61.1%**, 중동 26.2%, 아프리카 5.5%

○ 수원국 소득그룹별로는 **중하소득국가에 51.1%**, 최빈국을 포함한 **저소득국가**(최빈국은 26.1%)에 **46.9%**를 지원

○ 지원분야별로는 총액의 53.5%를 교육·보건 등 **사회인프라·서비스부문**, 30.6%를 경제인프라·서비스부문에 지원

□ 실시 체계

○ **재경부**는 양자간 유상원조(EDCF), 다자간 원조중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을 담당

○ **외교부**는 양자간 무상원조(KOICA 위주)의 85%를 담당하며,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도 담당

○ 정통부, 교육부, 과기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양자간 무상기술원조와 국제기구 증여 등을 시행 (총액의 약 9%)

□ 실시 절차

○ EDCF 사업은 수원국의 차관신청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순환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정부간 협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 KOICA는 다양한 형태의 무상자금협력사업(프로젝트형사업, 물자공여사업, 재난복구지원사업) 및 기술협력사업(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인력, 해외봉사단파견 등)을 정부간 협정 또는 협의를 거쳐 실시

3.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

1 국제개발협력 이념 및 목적 부재

○ 일부 목적이 KOICA법 및 EDCF 법에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조**실시에 관한 **이념, 목표, 전략 등 부재**

<사례>

☞ OECD DAC 회원국 중 11개국이 각기 고유의 원조이념, 철학, 비전 및 목적들을 규정하는 법령 보유(20개국이 **정책문서** 보유)

2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비해 국제개발협력규모 미흡

○ '04년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규모는 **4.2억불**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6%에 불과**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03기준, US$12,000)과 비슷한 시점의 일본 국제개발협력규모('85)의 1/10수준에 불과

<사례>

☞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 네덜란드(0.74%) 및 1인당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63%), 그리스(0.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태국도 '03년중 GNI 대비 0.13%에 달하는 1.67억불의 국제개발협력 제공

☞ 중국의 경우에도 '04년 7억불 상회

※ 단, 대북지원규모 감안시, 우리의 재정능력에 비해 적지않은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 필요

○ **對개도국 무역흑자**에도 불구, 국제개발협력지원은 **인색**하다는 평가

- '04년 우리나라는 325억불의 대개도국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대선진국 무역은 44억불 적자

※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재원의 해외이전 또는 국부의 유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익의 증진 수단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 필요

- 무상원조일지라도 자국산 물품 및 인력제공으로, 일반적으로 원조액의 75%는 국내로 환수

3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미흡

○ 원조에 대한 조정기구 부재로 **조정 및 통합기능이 취약**

- 유무상 총괄 중장기 국제개발협력정책 수립, 국제개발협력규모 확대계획, 유무상 비율 조정, DAC가입문제 협의, 유무상 통합 국별 지원계획 작성, 동일 평가체제 적용 등에 대한 협의·조정 미흡

※ 감사원의 원조정책 감사의견(재경부와 외교부간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필요)에 따라 05.1.부터 양 부처간 ODA실무협의회(국장급)를 운영중이나, 성과 미흡

○ 유무상**사업간 연계부족**과 성과제고에 한계

- KOICA사업과 EDCF사업간 사업 선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연계 전략이 부족하고 개별프로그램 지원으로 성과제고에 한계

<사례>

☞ KOICA개발조사사업('91-'04년) 47건중 EDCF와 연계된 사업은 5건에 불과(연계율 약 10%)하나 일본의 경우 '04년도중 연계율이 20.4%(JBIC 엔차관 49건중 10건)

☞ 국별 특정분야(병원·직업훈련원 건립 등)에 대해 유·무상 정책 및 시행기관간 사전협의 없이 중복 지원하는 현상 상존

- **부처별** 자체 국제협력**사업**(무상기술원조) 추진이 **증가추세**이나, **부처와 KOICA간의 정보공유·사전 협의 및 조율 미흡**으로 종합적인 연계효과 기대곤란

※ 주요 무상기술원조 수행기관 및 사업

· KOICA, 정통부(인터넷봉사단파견, 연수생 초청 등), 교육부(개도국 유학생초청), 보건복지부(국제보건의료재단사업), 행자부(119구조) 등

※ 양자간 무상원조의 85%는 외교부(KOICA)가, 15%는 각 부처에서 시행중

· 무상원조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05년 1월 설치)를 운영중이나 유상원조사업과의 연계·조정 부족으로 종합적인 원조효과 제고에는 여전히 미흡

⇒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원조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나 조정을 위한 절차와 장치 강화 필요**

○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담당**조직으로는** 전략 개발 및 규모 확대에 따른 **정책기능 수행 곤란**

- 외교부 및 재경부 공히 개발협력부서가 "과"단위 수준이며, 담당 직원의 순환보직이동으로 인해 전문성 부족
- 정책수립 기능의 상당부분을 시행기관이 실질적으로 담당 또는 지원

4 성과중심적인 국제개발협력체계 미비

○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 수행**계획 부재**

- 원조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원조 추진 전략이 부재
- 수원국의 분야별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 및 우리의 실시 가능분야를 고려한 국별 차별화 전략 부재

※ 현재 대부분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하며, 우리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등 미흡

- 중점지원국에 대한 조사·계획기능(Country Programming)이 취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실시 미흡

• 중장기적 국별 지원계획 없이 일회성 프로젝트 위주

○ **평가 및 사후관리**체제 **미흡**

- 개별적인 프로젝트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음**
  - 사업평가의 지연 또는 미실시, 일관성있는 평가기준 미비
- 유무상 원조의 계획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부재로 성과중심적 사업 추진 곤란

○ **현장 우선적**인 국제개발협력 **수행체계** 구축 **미흡**

- 일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EDCF) 실시과정에서 **해외공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효율성 저하** 우려
- 수원국의 수요(needs)와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외공관의 역할 강화**(decentralization) 필요

※ 선진국들도 수원국 주재 공관의 역할과 현지판단 중시

5 국민의 지지 및 참여 기반 취약

○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우리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인지도 37% ('05.8.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 개발NGO, 대학, 민간기업 등과 적극적인 **파트너쉽** 체계 구축 **미흡**

- 해외 NGO에 대한 지원 확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유도 및 연계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 UN 천년개발목표(MDG) 달성년도인 2015년을 목표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비전 수립

<참고>

OECD 회원국(DAC)의 ODA관리체계 주요 개선방향

구 분	기 존 방 식	개 선 방 향
기본정책	부처별 전략 분산형 원조 단년 지원계획 비전략적 지원 국익우선 공여국 중심 지원전략 구속성 원조 유·무상 혼합	국가발전 전략통합 통합형 원조 중장기적 다년간 지원 계획 전략적 지원 개발목표와 국익조화 수원국 중심 지원전략 비구속성 원조 무상 중심
지원국 분야	다국지원 방식 다분야 지원 경제협력국 중심지원	선택과 집중 방식 중점분야 지원 최빈국 우선 경제협력국 지원
수행방식	개별 프로젝트 방식 원조 수단별, 형태별 지원 본부 통제형 수행체계 수요조사 방식 정부 채널 자체 평가활동	국별 프로그램 방식 통합적 연계 지원 분권형 현장형 수행체계 정책대화 방식 지원 채널 다양화 독립적 외부 평가방식

4.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 국가이미지 개선
- 국제적 영향력 확대

- 개도국의 빈곤퇴치 문제해결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지원
- 우리 국민의 대외진출여건 개선

추진시스템 개선	효율성 제고
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시스템 정립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해외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성과중심적 사업실시체제 구축 원조의 질적 개선 원조재원 조달/관리체제 개선

인프라 구축	국민참여 확대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설치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원조규모 확대 및 수행역량 확충	민간과의 파트너쉽 강화 개발NGO지원 및 참여확대 대국민 홍보강화 및 지지확대

4.1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모델 정립

□ 필요성

○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닌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을 개발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원조성과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전략**차원의 원조모델 개발

□ 전략적 지원 분야

○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중점 지원

△경제개발 경험 (경제기획 등), △빈곤퇴치(보건위생,환경 등), △인적자원개발(교육,직업훈련 등), △인프라 구축, △IT분야 등

○ 지식기반중심의 제도역량 배양, 민주주의적 가치 향상(good governance 등) 및 인간안보(난민지원, 치안유지 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국제개발협력 형태

○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풍부한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분야 (예: 우리의 개발경험과 인적자원개발 등) 중심의 **무상기술협력** 및 **유상원조**를 적절히 **병행**

○ **중기적**으로는 유·무상 **원조수단**을 다양하게 **혼합·연계** 활용한 **부문별 원조**(Sectorwide Approach: SWAp)* **실시**

*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원조방법이 아닌 특정분야(Sector)와 관련된 제반 협력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원조방법

□ **중점지원 국가 및 지역**

○ 경제 및 정치외교·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라 **대륙별로 중점 지원 대상국가**를 선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원조 배정

-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목적**의 주요 달성수단으로서 지원국 선정에 있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는 **가급적 최빈국을 지원**
- **유상원조**는 개도국과 **호혜적인 경제적 이해**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를 지원하되, **가급적 상환능력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

4.2 추진시스템 개선

4.2.1 종합적인 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시행시스템 정립

○ 모든 관계부처의 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원조계획 수립

- 연도별 지원 규모 및 분야, 중점지원 대상국가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연도별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심의·확정

4.2.2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 유·무상원조 **정책기관간 협의·조정** 강화

- 유·무상원조사업 발굴·계획수립·평가 등 주요 사안별 협의·조정기능 확대 (재경부·외교부간 'ODA정책실무협의회' 활용)

○ **무상원조 관련기관간** 조율·협의 강화

- 사업선정단계부터 협의·시행 (현행 외교부주관 '무상원조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활용)

4.2.3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 **국제개발협력정책과 프로그램전반,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 평가방식 도입** 검토

<사례>
☞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원조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수행

○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시행기관 **내부의 담당조직 및 평가기능 강화**

○ 사업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반부패규정 준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조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원조계획과 평가 규정을 제정

○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기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체제 확립

4.2.4 해외 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 해외재난 지원에 대한 정부내 총괄부처가 미비하므로 해외재난 부문의 조직적, 입체적 지원을 위한 총괄 협의·조정 시스템 필요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재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

- 정부기관의 해외재난구호 지원업무를 총괄·조정
- 민간부문(예: NGO 등)과도 해외재난구호업무 사전조율 및 연계 강화
- 해외재난 긴급구호를 위한 자금으로 KOICA예산에 일정액(예: 500만~1,000만불)을 증액·편성하는 등 신속지원 대응방안 마련 검토

4.3 효율성 제고

4.3.1 성과중심적인 사업실시체계 구축

□ **중기(中期) 국별 지원전략 수립**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지원국을 선정, **3~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정책의 계획성 강화와 종합적인 개발방식 추진 필요

- **아·태지역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기타 대륙별 3~5개** 거점국가 포함

○ **중점지원국의 경우 2~3개 중점협력분야**, 일반지원국의 경우 1~2개 중점협력분야로 **선택과 집중**

- 개도국의 우선순위, 개발잠재력, 경제협력수준, 외교적·인도주의적 고려,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국별 차별화**전략 수립
- 정례적인 원조정책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우선분야와 지원가능규모**를 수원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국제개발협력재원의 **예측가능성** 제고

□ **분야별 지원전략 수립**

○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 수요자 중심의 지원 원칙하에 개도국과의 파트너쉽 중시

- 개도국의 자체 개발계획과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가급적 빈곤감소전략(PRS)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원

○ 유무상자금과 기술을 패키지화하고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사업을 상호 연계하는 **부문별 패키지원조** 도입

○ 우리기업의 대개도국진출지원 분야 및 사업 발굴

- EDCF의 경우, 3천만 달러이상의 대규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당 지원규모의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 **현장중심적인 사업수행**

○ 개발협력의 현장에 위치한 공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장 여건에 맞는 시행체제 강화

- 사업 발굴단계부터 수원국 의견 수렴 및 진행과정에서 공관과 사전협의
- 공관은 원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추진상황 점검
- 개도국주재 공관의 담당인력과 전문성을 보강

<사례>
☞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공여국은 대사관이 원조기관간 현지조정을 총괄

4.3.2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개선

□ **유무상지원 국가·분야 차별화 및 중장기적 무상비율 제고**

○ **유상원조는 경제협력 등을 고려**, 지원국가 및 분야를 선정하고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인도주의적 목적을 고려하여 가급적 **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

○ 중장기적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로 유무상 비율을 적절히 안배하는 방안 검토

※ 중기재정운용계획 시안상 '09년도 양자원조중 무상원조는 45%

<사례>
☞ DAC 회원국의 '02-03년 국제개발협력(ODA)승인총액기준 평균 무상원조비율은 90% 내외 (양자원조의 경우는 86%)

·일본은 DAC회원국중 최저치인 56%, 양자원조중 무상비율은 47%

□ **점진적 · 단계적 언타이드화**

○ OECD 등의 규제 및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무상**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

- 단,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컨설팅 능력배양 등을 통한 언타이드 원조 수주능력 제고 병행

□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

○ UN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우리의 GNI대비 최빈국지원 비율(0.01%)은 DAC(0.08%)의 1/8수준

4.3.3 국제개발협력 재원 조달 · 관리체제 개선

□ **'09년 이후 ODA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조달 · 확충방안 강구 필요**

○ 유 · 무상원조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재원조달 · 관리방안 강구

○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장기안정적인 신규재원 확보 방안으로 복권수익과 해외여행객에 부과되는 출국부담금의 일부 배분 방식 등 재원조달방식 다양화 검토

<사례>
☞ 벨기에는 국제협력 복권 발행, 일본은 우정성의 우편예금 이자중 일부를 국제개발협력 재원중 하나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신규원조재원의 일부로 환류되는 유상원조의 상환재원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계획 수립

□ **단년주의와 다년도 국별지원계획과의 조화**

○ 대부분의 원조사업은 2~3년의 계속사업이나, 소요비용은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

○ 중점지원국에 대해 **다년간(3~5년간) 예산**(Multi-year)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4.3.4 국제개발협력 실시기관간 연계 강화

○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추진 시스템에 의한 정책결정에 따라 수출입은행(EDCF)과 KOICA가 각각 현행대로 유·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되 실시기관간 연계를 대폭 강화

- 국별 원조사업 및 프로그램 **조정기준 등 설정** 검토
- KOICA개발조사사업과 EDCF지원**사업간 사전연계**
- KOICA와 수은(EDCF)간 실무협의의 정례화
- 유무상사업간 중첩지원을 줄이기 위한 사전협의 조율
- 사후 지속성강화를 위해 EDCF와 무상원조사업간 지원연계

4.4 인프라 구축

4.4.1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설치

□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
- 재경부-외교부간 국장급 ODA 실무협의회가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

○ MDGs 달성 등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일원화된 정책 시스템** 구축 (‘One Korean ODA Policy’ 추진)

<사례>
☞ 프랑스 : 총리 주재 각료급 "부처간국제협력개발위원회(CICID)"
☞ 일 본 : 내각 관방장관 주재 "대외경제협력관계장관회의"
(ODA안건만 상정)

□ **설치 방안**

○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설치

※ 지속위에서는 개도국 원조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원조정책 심의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 권고('04.6)

○ 주요 기능

-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연도별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 심의·조정
- 중점지원국 및 중점지원분야 지원전략 검토·확정
- 국제개발협력 추진실적 평가

○ 구성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KOICA총재, 수출입은행장,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위원: 관계기관 실국장급 및 민간전문가)를 설치

4.4.2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 **제정 필요성**

○ **기관이나 기금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률**체제(KOICA법, EDCF법)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이념과 관리시스템 및 정책조정기구를 규정하기 곤란

⇒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전략, 관련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통합법 필요**

※ 현행 KOICA법, EDCF법의 통합 또는 존치·병행 등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

□ 주요 내용

○ 이념, 목적, 추진전략, 기본계획 수립

○ 원조정책수립, 집행, 평가등의 추진 시스템

○ 부처간 국제개발협력정책협의·조정기구 설치

○ 해외긴급재난구호

※ 국제개발협력법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원조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별도의 정책문서(예: 헌장) 제정도 검토

4.4.3 국제개발협력 규모의 확대

□ **국가위상 제고와 국익증진 등을 위해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05~09)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05.4)에서 **'09년까지 ODA/GNI수준 0.1% 수준으로 확대키로 잠정 합의**

○ MDG달성 마지막 연도인 2015년까지 우리의 ODA/GNI 비율을 최소한 현 DAC평균수준(0.25%)으로 확대 검토

※ 유엔은 2010년까지 ODA/GNI 0.5%, 2015년까지 0.7% 권고,

· OEDC DAC가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을 합산,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0년 DAC회원국 평균 ODA/GNI는 0.36% 예측

※ 지속위는 2006년까지 GNP대비 0.1%, 2010년까지 0.2% 목표 설정 권고

<2010-2015 장기 ODA확대계획 시뮬레이션>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ODA 총지출	12,323	15,869	19,797	24,138	28,930	34,209
GNI(조)	1,018.4	1,079.6	1,144.3	1,213.0	1,285.8	1,362.9
ODA총지출/GNI	0.121	0.147	0.173	0.199	0.225	0.251

[주요가정]

1) GNI : '03년 GNI 대비 2009년까지 연 8%(국가재정운용계획), 2010년 이후 연 6% 경상성장 가정

2) 2015년 ODA 총지출/GNI 0.25% 목표 매년 0.026%p증가 추정

3) 환율 : 1,050원/달러(국가재정운용계획) 적용

4.4.4 국제개발협력 수행역량 확충

□ **전문인력의 양성**

○ 국제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되고 분야가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어 부족한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

- 사업실시인력의 아웃소싱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육성
- 특성화된 대학 또는 (국제)대학원에 학위과정 및 단기과정 개설을 지원하여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종사인력 육성
- 국제개발기구 (UNDP, 세계은행, ADB 등)근무 유경험자 발굴 및 활용을 위해 관련 네트웍(DB등) 구축
- 국내 전문인력의 유엔·OECD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글로벌 네트웍 구축**

○ **선진국 및 다자간 기구와 원조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선진원조기법 및 경험을 습득

○ 국제기구(IBRD, ADB등) 및 선진국 공여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양자간·다자간 원조정책협의를 활성화

- Co-financing을 통한 **공동사업 적극 참여**
- 특히 국제개발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Trust Fund)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배가

□ **연구조사기능 강화**

○ 정책부처는 물론 집행기관의 연구조사기능은 매우 취약

- KOICA 및 수은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조사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단기적으로** 국내대학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용역계약** 및 소규모 **연구인력 확보**를 통한 연구조사 기능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ODA 및 개도국 지역연구 등을 **전담**하는 **센터** 설립 검토

<사례>
☞ 일본 JICA의 국제협력종합연구소,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 종합적 **지식-정보-인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개발협력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조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효율적인 정보와 인력 활용
- 주요 원조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DB를 구축하여 원조 시행부처 및 NGO등과 공유

4.4.5 OECD/DAC 가입 검토

□ **가입 필요성**

○ DAC가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중견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적정 역할분담이라는 공동의무 수행

※한국은 OECD산하 26개 위원회중 DAC에만 유일하게 미가입

<장점>

- 원조규모의 확대와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이행, 국가 신인도 및 위상 제고
- 국제적 원조논의과정에의 능동적 참여로 우리 입장 반영, 및 선진원조기법 도입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증진

<단점>

- 원조사업에 관한 DAC의 규범 및 기준 준수로 우리 원조사업(특히 타이드원조) 시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우리의 재정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원조예산 확대 압력 증가

□ **가입 요건 및 시기**

○ 가입요건중 원조규모(1억불이상)는 기충족

- ODA전략, 정책 및 운영 체계구비,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마련 등의 조치 필요

※ DAC 가입요건은 원조규모 1억불 이상 또는 GNI대비 0.2%이상 충족

○ 2010년 전후를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하되 **원조목표 달성 추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지속위는 OECD가입 10주년인 2006년을 목표로 DAC가입추진 권고

○ DAC가입 준비반을 설치·운영하여 DAC의 가입 심사시에 대비

4.5 국민참여 확대

4.5.1 민간과의 파트너쉽 강화

○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정책수립 및 사업수행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 제도 구축**

- 개발NGO, 시민단체, 학계, 경제단체 대표 등을 "국제개발협력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 개발컨설턴트협회(또는 ODA사업 참여협의회)를 구성, 원조산업과 국제개발 산학연 협력체계를 전략적으로 육성
- KOICA봉사단 참여기회 확대, 중장년실업 증대로 인한 퇴직인력 및 고령화시대 은퇴인력 활용을 위한 'Senior Volunteer 제도' 확대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 **집행업무의 외주** 가능분야 발굴 확대

- 프로젝트, 개발조사, EDCF차관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외주 확대
- 봉사단 파견규모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독립기구화 검토
- 초청연수사업에서 민간 위탁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장기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도입 확대

○ 국민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봉사활동 참여시 혜택 부여**나 대학 학점 부여 등 검토

4.5.2 개발NGO 참여 확대

○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는 민간과 NGO등 **시민사회와의 상호연계** 아래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

- 선진국에서는 NGO를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Contractor)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Civilateral)"를 양자(Bilateral), 다자(Multilateral)원조채널과 함께 3대 원조채널의 하나로 중시

<사례>

☞ DAC회원국의 개발NGO에 대한 지원은 국제개발협력(ODA)총액의 평균 2.14%('02년,'03년)이나 우리나라의 개발NGO 지원액은 전체 ODA의 0.5%(2001년,2002년)수준으로 DAC평균의 1/4수준

(2003년도 개발NGO에 대한 지원 실적은 이라크·아프간 특별사업비 확대로 일시적으로 1.8%로 크게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하락)

○ **개발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NGO사업 지원방식 다양화 추진

- 무상원조 예산중 개발 NGO에 대한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NGO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우수 NGO에 대한 다년도 지원 추진
- 현 NGO 재정협력방식인 Matching Grants (사업별 일정비율의 사업비 지원) 방식외에 Block Grants (선별된 NGO들에게 일정액을 일괄지원) 방식 도입 검토

<사례>

☞ DAC회원국의 개발NGO에 재정지원방식은 대부분 Matching Grants 형식이며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영국 등은 Block Grants 가미

4.5.3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내용인지도가 37%에 그치는 등 국제개발협력 홍보 강화 필요성 증대

○ 워크샵, 강연회 개최, 뉴스레터 배포 및 인터넷 홍보, 국제개발협력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국민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

- 방송프로그램 제작, 매년 10.24 UN의 날을 계기로 '국제협력주간' 설정, 국제개발자료관(ODA Archive) 설치 등

○ 원조사업에 대한 민간모니터링, 국제개발협력성과의 대외공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국제개발협력**사업현장**에 학생, 교사, 기업인, 시민단체 회원등**의 견학·시찰** 주선

5.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마련** ('05.11.12)

□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및 출범** ('05.12～'06.1)

□ **개선방안 시행** ('05.12-'06.12)

<첨부1>

부처별 행정조치사항

분야별 과제	행정조치사항	주관부처
1. 추진 시스템 구축	1.1 종합계획 수립·시행시스템 정립	외교부,재경부, 국조실
	1.2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외교부, 재경부, 국조실,관련부처
	1.3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 조직 및 기능강화 방안마련	외교부,재경부, 국조실
	1.4 해외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외교부, 관련부처
2. 효율성 제고	2.1 성과중심적 사업실시체제 구축 - 한국형 국제개발협력모델 정립 - 국별, 분야별 원조계획 수립 - 현장중심적 사업수행방안 마련	외교부, 재경부,관련부처
	2.2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개선 - 무상원조 및 언타이드율 제고 - 최빈국지원 강화	외교부, 재경부
	2.3 재원조달 및 관리체제 개선 - ODA재원확충방안 마련 - 다년도 예산지원방안 마련	예산처,재경부, 외교부
	2.4 국제개발협력 실시기관간 연계강화	외교부, 재경부
3. 인프라 구축	3.1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설치	국조실,외교부, 재경부
	3.2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법제처,외교부, 재경부,국조실
	3.3 국제개발협력 규모의 확대 - 2009년이후 중기 ODA확대계획 수립	예산처,재경부, 외교부
	3.4 국제개발협력 수행역량 확충 -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네트웍 구축 - 연구조사기능 강화	외교부, 재경부, 교육부
	3.5 OECD/DAC가입 - DAC가입준비반 설치	외교부,재경부
4.국민참여 확대	4.1 민간과의 파트너쉽 강화 - 개발컨설턴트협회 구성 - 원조시행업무의 외주 확대	외교부,재경부
	4.2 개발NGO지원 및 참여확대	외교부
	4.3 대국민 홍보강화방안 마련	국정홍보처, 외교부,재경부

<첨부2>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비교표

구 분	개선전	개선후
정책결정 및 조정	○ 유무상 이원화된 정책결정 체계 - 재경부와 외교부가 각각 정책결정 ○ 유무상 및 무상간 정책조정 기능 미흡	○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위원장 : 총리)" 설치 - 국제개발협력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총괄 조정 - 원조목표, 전략, 연도별 및 중장기 원조계획 심의·확정
법적 기반	○ 유무상원조를 통합하는 법적 근거 부재 - 원조이념·목표·전략 부재	○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사업시행	○ KOICA와 EDCF(수은)사업간 연계 미흡	○ 새로운 정책결정 및 조정체계에 따라 각각 사업실시하되, 양기관간 연계 대폭강화
민간참여	○ 공식적 참여·협의기구 부재 ○ 민간활용 미흡	○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에 NGO, 경제계 등 참여 ○ 개발컨설턴트협회등 구성 ○ 국민들의 참여여건 개선 - 개발NGO지원 확대
공관의 역할	○ 현장중심적 역할 미흡	○ 공관의 현장기능 강화
긴급재난구호	○ 총괄조정기능 미흡	○ 외교부의총괄조정기능 강화
평 가	○ 평가기능 취약	○ 담당조직 및 기능 강화 ○ 제3자 평가방식 도입 ⇒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지원 방식	○ 유무상으로 분리지원 - 소액다국·다분야 지원	○ 통합지원 - 선택과 집중, 중점분야지원

<첨부3>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 비교표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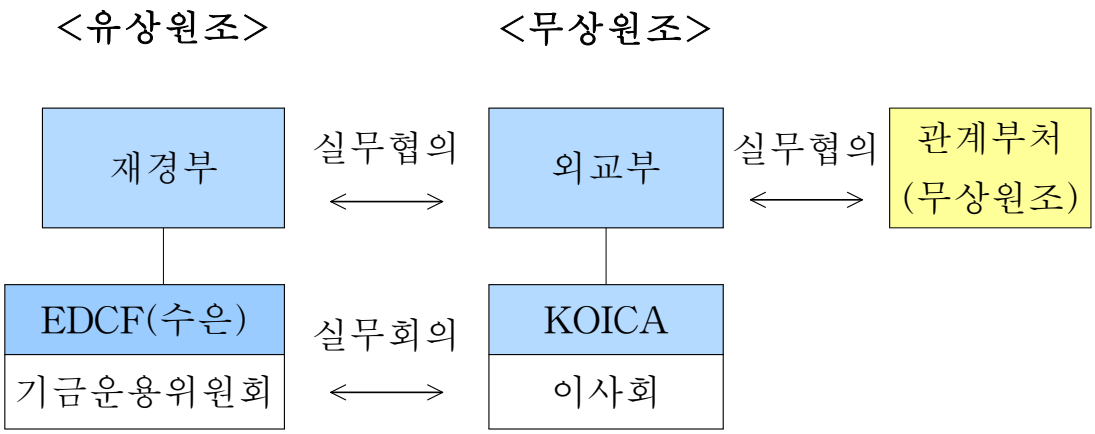

[개 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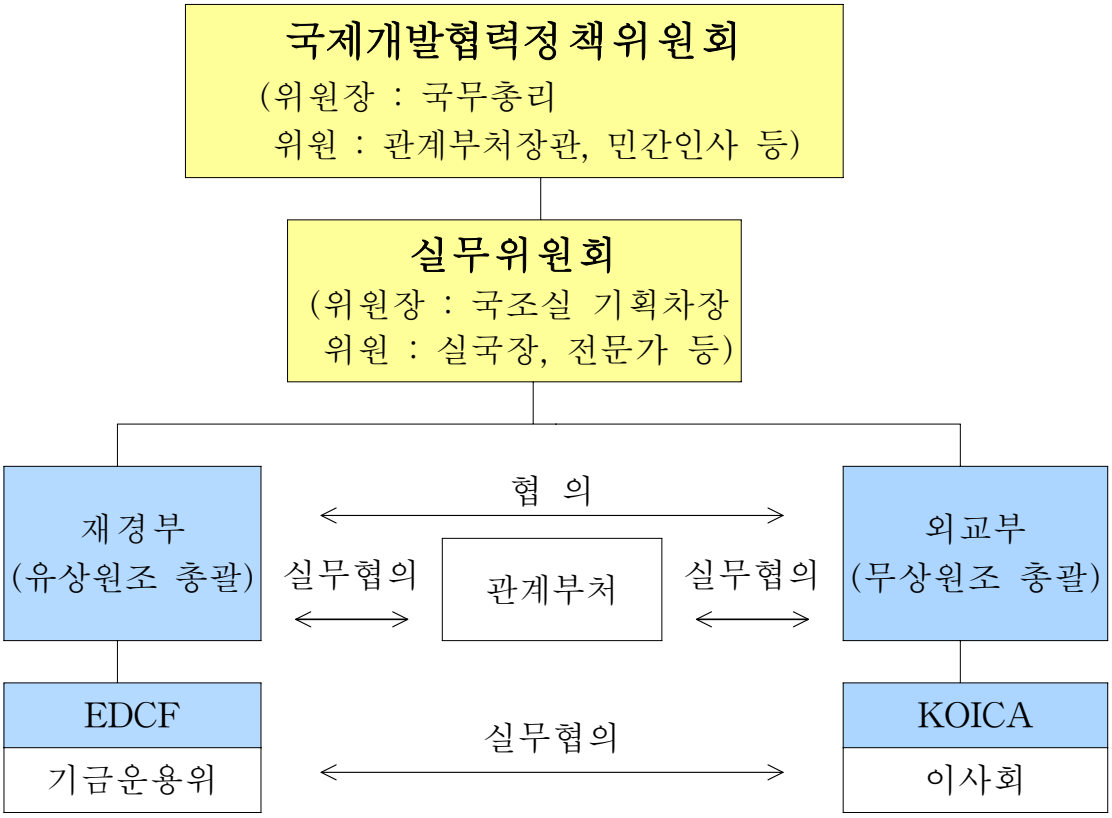

<첨부4>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실적('96~'04)

(단위 : 백만불)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공적개발원조 (ODA)	159.15	185.61	182.71	317.49	212.07	264.65	278.78	365.91	423.32
① 양자간 협력	123.31	111.34	124.70	131.35	131.19	171.54	206.76	245.17	330.76
ㅇ 무상원조	53.41	54.77	37.21	38.95	47.78	52.97	66.70	145.46	212.09
ㅇ EDCF차관	69.90	56.57	87.49	92.40	83.41	118.57	140.06	99.71	118.68
② 다자간 협력	35.84	74.27	58.01	186.14	80.88	93.11	72.02	120.74	92.56
(국제기구증여)	(30.08)	(29.06)	(33.59)	(67.70)	(25.27)	(60.10)	(50.69)	(84.92)	(58.40)
(국제기구출자)	(5.76)	(35.53)	(28.32)	(129.46)	(68.34)	(35.03)	(34.45)	(52.53)	(44.18)
(기 타)	(-)	(9.68)	(-3.90)	(-11.02)	(-12.73)	(-2.03)	(-13.14)	(-16.72)	(-10.02)
GNI (억불)	**4,804**	**4,374**	**3,168**	**4,021**	**4,552**	**4,213**	**4,770**	**5,761**	**6,810**
ODA/GNI (%)	**0.033**	**0.042**	**0.058**	**0.079**	**0.047**	**0.063**	**0.058**	**0.064**	**0.062**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10대 수원국

(2004년도 양자원조의 총지출액기준)

(단위 : 백만 불)

	무상원조	유상원조	소계	비중(%)
이라크	72.2	-	72.2	20.7
베트남	11.7	27.9	39.5	11.4
중국	5.9	22.2	28.1	8.1
캄보디아	3.9	19.9	23.9	6.9
아프가니스탄	21.5	-	21.5	6.2
5대 수원국 누계	115.2	70	185.2	53.2
스리랑카	1.9	17.5	19.4	5.6
방글라데시	2.0	16.6	18.7	5.4
인도네시아	7.6	11.0	18.6	5.3
필리핀	7.2	2.1	9.3	2.7
알바니아	0.0	7.2	7.2	2.1
10대 수원국 누계	133.9	124.4	258.4	74.3
합 계	212.1	135.3	347.9	100.0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지원현황

(2004년 양자원조 총지출액 기준)

지역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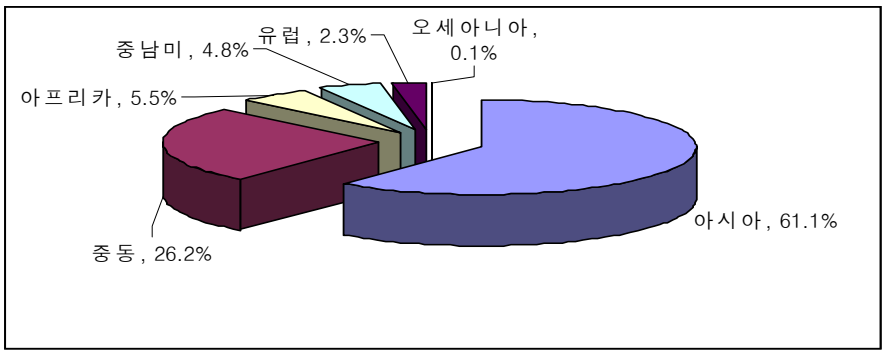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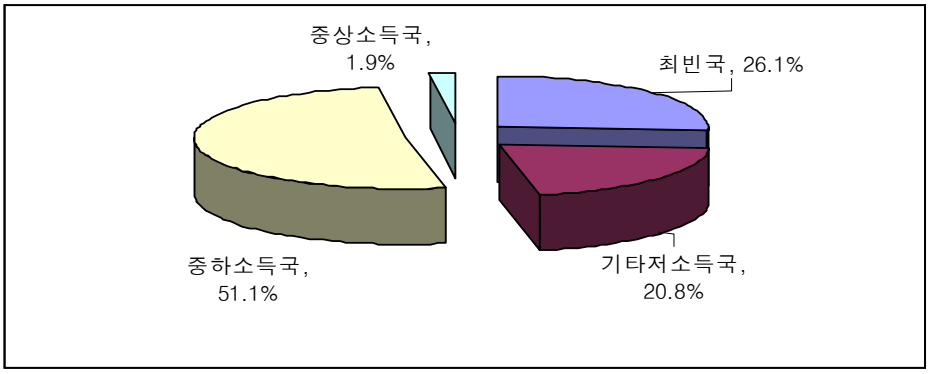

부문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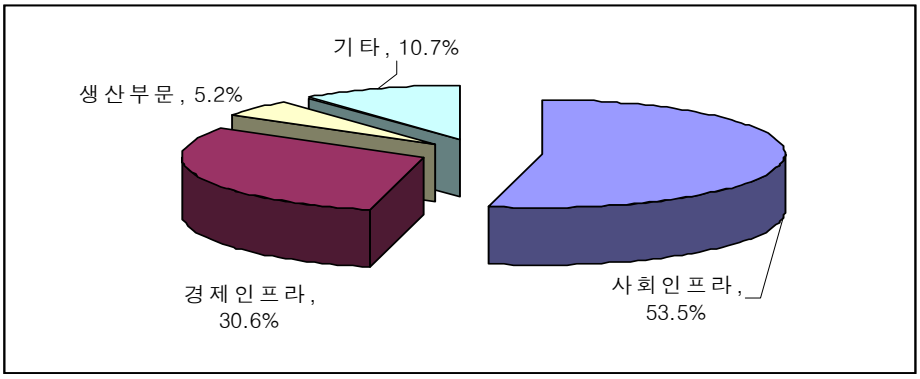

<첨부 5>

주요부처 · 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실적

(2004년 양자다자원조 합계 순지출 기준)

부처 · 기관명	금액(천미불)	비중
외교통상부 (KOICA)	200,994 (175,335)	47.5%
재정경제부 (EDCF) (한국은행)	185,325 (122,104) (62,513)	43.8%
국방부	15,805	3.7%
정보통신부	7,625	1.8%
교육인적자원부	3,067	0.7%
과학기술부	2,819	0.7%
환경부	2,259	0.5%
농촌진흥청	1,140	0.3%
보건복지부	702	0.2%
해양수산부	223	
여성부	148	
행정자치부	121	
공정거래위원회	220	
국가청렴위원회	23	
국가보훈처	41	
관세청	24	
국세청	15	
기상청	23	
대검찰청	82	
통계청	19	
특허청	244	
산림청	286	
서울시	470	
경기도	562	
전라남도	10	
충청남도	5	
마사회	9	
KDI	1,059	
합 계	**423,318**	

<첨부6>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ODA) 실적 비교

(단위 : 백만불, %)

국 가 명	2004(잠정치)		2003		2002		2001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호 주	1,465	0.25	1,219	0.25	989	0.26	873	0.25
오스트리아	678	0.23	505	0.20	520	0.26	533	0.29
벨 기 에	1,463	0.41	1,853	0.60	1,072	0.43	867	0.37
캐 나 다	2,537	0.26	2,031	0.24	2,004	0.28	1,533	0.22
덴 마 크	2,037	0.85	1,748	0.84	1,643	0.96	1,634	1.03
핀 란 드	655	0.35	558	0.35	462	0.35	389	0.32
프 랑 스	8,475	0.42	7,253	0.41	5,486	0.38	4,198	0.32
독 일	7,534	0.28	6,784	0.28	5,324	0.27	4,990	0.27
그 리 스	465	0.23	362	0.21	276	0.21	202	0.17
아 일 랜 드	586	0.39	504	0.39	398	0.40	287	0.33
이 탈 리 아	2,462	0.15	2,433	0.17	2,332	0.20	1,627	0.15
일 본	8,906	0.19	8,880	0.20	9,283	0.23	9,847	0.23
룩셈부르크	241	0.85	194	0.81	147	0.77	139	0.76
네 덜 란 드	4,235	0.74	3,981	0.80	3,338	0.81	3,172	0.82
뉴 질 랜 드	210	0.23	165	0.23	122	0.22	112	0.25
노 르 웨 이	2,200	0.87	2,042	0.92	1,696	0.89	1,346	0.80
포 르 투 갈	1,031	0.63	320	0.22	323	0.27	268	0.25
스 페 인	2,547	0.26	1,961	0.23	1,712	0.26	1,737	0.30
스 웨 덴	2,722	0.78	2,400	0.79	2,012	0.84	1,666	0.77
스 위 스	1,545	0.41	1,299	0.39	939	0.32	908	0.34
영 국	7,836	0.36	6,282	0.34	4,924	0.31	4,579	0.32
미 국	18,999	0.16	16,254	0.15	13,290	0.13	11,429	0.11
합 계	78,827	0.25	69,029	0.25	58,292	0.23	52,335	0.22
우 리 나 라	423	0.06	366	0.06	279	0.06	265	0.06

DAC회원국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질적조건 비교

국 가 명	총원조의 증여율 (Grant Element) (%)	양자원조중 증여비율(%)	구속성(Tied) 비율(%)
호 주	100.0	100.0	32.8
오스트리아	100.0	99.9	48.6
벨 기 에	99.5	98.6	0.9
캐 나 다	100.0	99.1	47.4
덴 마 크	100.0	97.0	28.5
핀 란 드	100.0	97.2	14.2
프 랑 스	95.1	84.5	3.1
독 일	97.2	87.1	5.4
그 리 스	100.0	100.0	5.0
아 일 랜 드	100.0	100.0	0.0
이 탈 리 아	99.4	71.3	-
일 본	87.5	46.8	3.4
룩셈부르크	100.0	100.0	-
네 덜 란 드	100.0	100.0	-
뉴 질 랜 드	100.0	100.0	18.6
노 르 웨 이	100.0	98.0	0.1
포 르 투 갈	100.0	99.2	6.3
스 페 인	92.0	63.3	44.0
스 웨 덴	99.9	98.8	0.0
스 위 스	100.0	97.4	3.6
영 국	100.0	90.1	0.0
미 국	100.0	99.4	-
합 계	**97.0**	**86.1**	**6.8**
우 리 나 라	**86.6**	**46.0**	**80.6**

주) DAC회원국의 총원조와 양자원조는 승인액기준 02~03년 평균, 구속성비율은 기술협력과 행정비용을 제외한 양자원조 승인액 기준, 우리나라 수치는 '03년 기준

<첨부7>

주요국의 ODA 관리체계

구 분	미 국	일 본	프랑스
ODA 목적	..	국제사회의 개발 및 평화에의 기여를 통해 일본의 번영과 안전 보장	..
근거법률	국제개발협력법('61)	ODA 헌장('03년)	..
기본정책문서	미 국무부 및 국제개발청(USAID), 전략계획: 2004 ~ 2009 회계년도	ODA 헌장 ('92년, '03년 개정)	..
기타 일반정책문서	◆국제개발협력백서: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2004.1) ◆국가안전보장전략(2002) ◆국익안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자유과 안전보장과 기회를 증진하기(2002)	ODA 백서	..
주무장관	USAID 청장 (국무장관에게 보고)	외무성장관	외무부장관, 경제재무산업부장관
관련장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재무성장관	..
주무부서/기구	USAID	외무성 경제협력국	대외협력개발총국(외무성)
유관부서/기구	국무부, 재무부 국제업무실, 새천년도전공사, 농무부, 국방부, 보건부,내무부 등 정부부처와 평화봉사단	JICA, JBIC, 재무성, 경제통상산업성,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 농림수산성, 보건노동복지성, 국토운수성, 법무성, 환경성 등	경제재무산업부, 프랑스개발청, 교육부, 농업부, 환경부 문화부 등
부처간 조정 기구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부처간 조정 담당 ◆한시적/상시적인 정책조정위원회(PCC)(개발PCC는 국무장관이 의장)	◆해외경제협력 관계장관위원회 ◆부처간장관회의	부처간국제협력및개발위원회(CICID)
이국간원조 주요 대상국	USAID는 아프리카 22, 중동 및 아시아 20, 중남미 17개국 등 70개국이상의 사무소	140개국, 아시아 집중	54개국을 포함하는 우선연대국(ZSP)
주요 원조부문(sector)	농업,분쟁관리,민주주의/거버넌스, 경제성장과 무역, 교육, 환경/인구, 보건/영양	빈곤경감, 지속적 성장, 범지구적 문제, 평화구축	수도위생, 교육, 보건 및 HIV/AIDS, 농업 및 낙후지역개발, 사회기반
자문기구	국제개발협력자원봉사자문위원회	ODA 통합전략위원회	고위국제협력자문위원회

구 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ODA 목적	지속가능한 빈곤경감	빈곤박멸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인간개발 촉진(국제개발협력법, 1998)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화, 빈곤경감, 경제성장, 지역통합, 인간개발을 위한 유럽 파트너쉽 촉진
근거법률	··	국제개발협력법('98년)	Decree Law 5/2003 13th January
기본정책문서	*Mutual Interests, Mutual Responsibility: 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en route to 2015*('03)	4개년 마스터플랜 (2001~2004)	*The Portuguese Co-operation for the Incoming 21st Century - Strategy Paper*(the Council of Ministers Resolution no. 43/1999 18th May)
기타 일반정책문서	Aid in Progress('95)	··	··
주무장관	대외개발협력부	외교부내 국제협력 및 중남미 본부장(장관급)	외부부내 외교협력 차관
관련장관	외무부	경제부장관, 경제부 통상관광본부장	유럽정세업무 차관 포르투갈연합 차관 재무부장관
주무부서/기구	국제협력총국(DGIS, 외무성)	국제협력 및 중남미본부(SECIPI) 및 산하 실시기관 스페인국제협력청(AECI)	포르투갈개발지원청(IPAD)
유관부서/기구	··	경제부(통상관광본부),농업부 등 13개 정부부처 자치령 및 지자체	재무부, 17개부처, 330개 지방자치단체
부처간 조정 기구	국제협력조정위원회 유럽협력조정위원회	◆국제협력부처간조정위원회 ◆연방-지자체간 개발협력협의회	··
이국간원조 주요 대상국	36개 장기원조국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및 중동의 저소득국 중심)	29개 중점지원국	7개 중점협력국가(앙골라, 동티모르, 모잠비크, 기니비소, 케이프베르디 등)
주요 원조부문(sector)	기초교육, 보건, 낙후지역 개발	기초사회서비스,교육,인권,민주주의와시민사회발전,환경,문화,과학기술연구	교육, 훈련, 문화 및 전통, 보건, 사회 인프라, 안보, 인도적 긴급지원
자문기구	··	개발협력민관협의회	··

<첨부 8>

국제개발협력(ODA)의 국제동향과 주요과제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국제동향

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s) 및 양허성 차관 (증여율이 25%이상인 Concessional Loan)을 의미

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분류

□ 협력주체에 의한 분류

○ 협력주체에 따라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 정부에 직접 제공하는 양자간 원조와 UNDP, 세계은행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연(분담금) 및 출자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로 분류

□ 공여형태에 의한 분류

○ 원조의 공여형태에 따라 물품이나 현금 지원과 같은 자금협력과 기술이나 지식 지원 등 지적자본의 이전인 기술협력으로 분류

- 기술협력사업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사업, 개발조사(사전타당성조사 , 투자조사 포함)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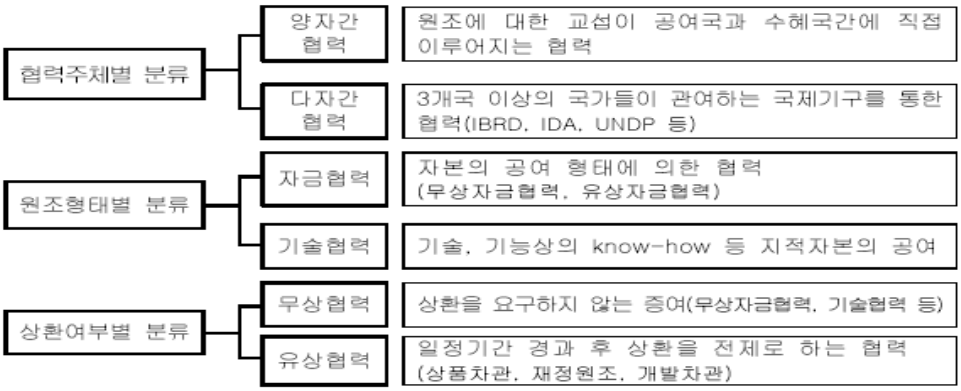

□ 상환 여부에 의한 분류

○ 개도국에 제공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원조(EDCF)와 무상원조(KOICA사업 등)로 분류

다. 국제개발협력의 국제동향

□ UN은 21세기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설정과 이를 주류화하기 위하여 "UN 천년개발목표"(MDGs)를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MDGs는 21세기 국제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었으며, MDGs 선언이 원조규모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

○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에 기초한 공여국의 전략수립(Alignment), 원조공여국간의 조정활동을 강화하여 원조 집행방식의 조화(Harmonization), 수원국 중심의 원조관리 체계를 강조

□ OECD/DAC는 회원국에 효율적인 정책권고 및 범세계적인 이슈, 기술협력, 평가등에 대한 광범위한 원조정책 권고 및 결의사항 제정 등 국제사회의 기준을 주도

2. 원조의 새로운 도전과제

가. 빈곤퇴치(Poverty Reduction)

□ 세계화와 함께 개도국들의 주변화와 빈곤화에 대처하기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확대되면서, 빈곤퇴치가 국제개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

○ 빈곤퇴치는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개발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UN은 물론 OECD, 세계은행, IMF등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노력을 본격화

□ 특히 유엔 밀레니엄 선언(2000.9)을 통해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설정

나.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2002.9.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개도국 국제개발협력 지원확대를 결의

○ WSSD에서는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이 절실한 과제임에 공감하고 빈곤퇴치 방안으로 ODA 증액, 시민사회 참여 등을 제안

다. 최빈국 지원확대

□ 1980.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3차 유엔개발 10년"에서 최빈국 지원 목표를 GNP대비 0.15%~2.0%로 설정

□ 2001.5. 제3차 최빈국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지원 확대, OECD/DAC에서 채택(2001.4)된 최빈국 원조의 언타이드화,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시어티브의 착실한 추진 등을 결의

○ 특히 세계은행과 IMF는 많은 최빈국이 포함된 고채무빈곤국(HIPC)의 외채탕감 및 국제적 지원체계를 강화

□ 2002.3.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율을 국제적 합의수준인 GNP대비 0.15~0.20%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

라. UN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 2000.9 UN총회에서 2015년까지 8개항의 UN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결의(UN 천년선언: Millenium Declaration)

○ MDGs 8개항중 하나인 "글로벌 개발파트너쉽 발전"에 "보다 관대한 ODA"가 포함

□ 2005.9. "UN정상회의"에서는 ODA확대등 MDGs 이행실적 중간점검 실시 및 각국은 ODA확대계획을 발표

마. OECD/DAC의 ODA 개혁논의

□ ODA개혁방안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발과 안보를 통합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ODA)개념 확대논의, 무역, 투자, 개발정책 등 대개도국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별 지원의 선별성(selectivity) 강화, 개도국의 국가발전정책과의 일치(alignment), 원조의 질 향상과 효과성 증대 이행점검과 성과측정,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논의임

○ 최근 안보와 개발, 분쟁예방이 개발원조의 주요 이슈로 논의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ODA)개념을 확대하여 안보지원 활동을 국제개발협력통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

○ 2004년 DAC 고위급회의에서는 아래 8가지 항목을 국제개발협력에 포함시키기로 승인

- 민주적 거버넌스와 안보체계에 대한 문민통제를 향상시키는 능력 배양, 안보체제 검토, 안보관련 지출관리, 안보체제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 강화, 소년병사, 신뢰구축과 분쟁예방 조치, 소형 무기와 경무기 확산 방지 등

< 보고자료 소관부서명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	
연 락 처	02-2100-2193